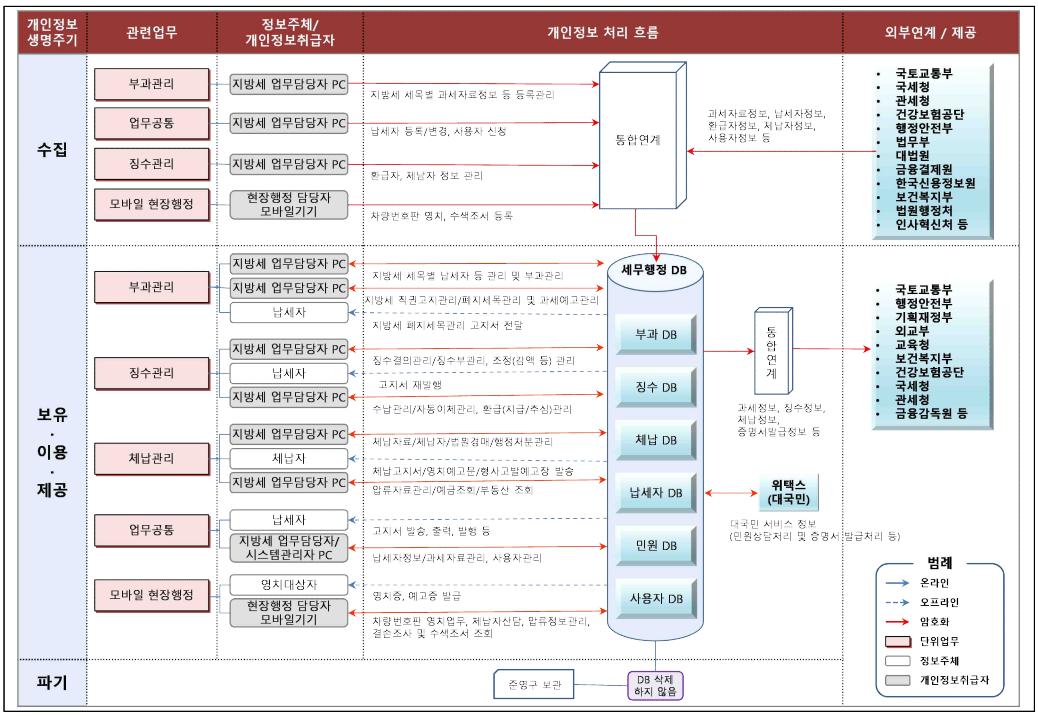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table>
<tr><td colspan="2">공공기관 명</td><td colspan="6">의왕시</td></tr>
<tr><td colspan="2">평가기관</td><td>케이씨에이
컨소시엄</td><td>평가
기간</td><td>2026.04.01
~
2026.04.30</td><td>평가
예산</td><td colspan="2">☐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td></tr>
<tr><td rowspan="8">평가대상시스템 개요</td><td>시스템명</td><td colspan="3">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td><td colspan="2">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td><td>2026.1.1. ~
2026.12.31.</td></tr>
<tr><td>추진개요
및 목적</td><td colspan="6">•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
• 지방세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
•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td></tr>
<tr><td rowspan="4">추진성격</td><td>대상여부</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50만 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연계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3호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처리</td><td rowspan="2">추진예산</td><td rowspan="2">102,650,562천원
(VAT 포함)</td></tr>
<tr><td>추진주체</td><td colspan="2">행정안전부</td></tr>
<tr><td>추진근거</td><td colspan="2">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업무의 정보화)</td><td>추진유형</td><td>☐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td></tr>
<tr><td>신기술 유형</td><td colspan="4"></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6">•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전국 지자체 사용)의 안정적 운영
• 지방세입(취득세, 재산세 등)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디지털 세정 혁신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지원</td></tr>
<tr><td>운용체계
변경내용
(변경인
경우)</td><td colspan="6">해당하지 않음</td></tr>
</table>

개인정보파일개요	파일명	정보주체 수	개인정보 항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 목적
	(지방세) 담배소비세관리	36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E-Mail	행정안전부, 관세청	담배소비세 부과 관리
	(지방세) 등록면허세관리	270,877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물건지, 면허명, 면허증, 은행명, 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허가번호	-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자동차세관리	238,605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E-Mail,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차량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장애정보	-	자동차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재산세관리	290,857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전자납부번호, 물건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기획재정부, 병무청,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기술보증기금, 행정안전부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주민세관리	363,119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핸드폰	대한적십자사	주민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지방소득세관리	122,596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전자납부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국세청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관리	452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물건지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취득세관리	291,507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핸드폰, 전자납부번호		취득세 부과 관리
	(지방세) 수납관리	549,389건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핸드폰, 은행명,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과세정보	금융결제원	지방세 수납 관리

	(지방세) 감액관리	96,004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사업자명, 은행명, 계좌번호, 과세정보	-	지방세 감액 및 수정 관리
	(지방세) 환급관리	149,952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환급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관세청, 시금고은행, 국세청	지방세 환급 관리
	(지방세) 체납관리	633건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직업, 직장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체납금액, 과세정보	행정안전부, 보험개발원, 법무부, 국토교통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세청	지방세 체납 관리
	(지방세) 압류관리	80377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직장주소,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 증권보유좌수, 보유액, 압류내역, 차량번호, 체납금액, 체납자지분, 소유지분율, 임차금액, 압류금액, 추심금액, 예금금액, 보험금액	대법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토교통부, 관세청,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지방세 압류 관리
	(지방세) 정리보류 관리	20,668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핸드폰, 자산정보, 납세정보, 행정처분정보, 신용정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정보원, 법무부	지방세 정리보류 관리
	(지방세) 납세자관리	6,969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과세정보	-	지방세 납세자정보 관리
	(지방세) 제증명관리	109,762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납세정보	-	지방세 제증명 발급 관리
	(지방세) 자동이체 관리	5,725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집연락처, 집주소, 과세정보	-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등 관리
	(지방세) 행정제재 관리	7,165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체납정보	-	행정제재 관리
	(지방세) 세무조사 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과세정보, 재산정보	-	세무조사 대상 관리 (법인 정보만 존재)

<table>
<tr><td>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td><td colspan="2">1. 개인정보 처리 흐름
- 차세대 표준지방세시스템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 납세자정보, 환급자정보, 체납자정보,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
- 의왕시 지방세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징수/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
- 차세대 지방세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이므로 DB에서 삭제하지 않음

2.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td></tr>
<tr><td>영향평가기준</td><td>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td><td>-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 2025.9.5.,일부개정)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제11조(평가항목)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22.3)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단,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 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점검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함.
.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1장)의 10개 항목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2장)의 7개 항목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의 17개 항목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의 27개 항목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td></tr>
</table>

	주요 평가기준	-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반영 -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영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년 10월 개정) 준용 -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지방세법』제49조, 제130조,『지방세기본법』제135조,『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개인정보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2.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 - 차세대 표준지방세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기간(준영구)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준영구로 산정되어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는 하고 있지 않음
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	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에 관한 업무 수행(1.1.2)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에 관한 업무 수행 - 내부 관리계획 수정·시행(1.2.1) : 법령에 명시된 항목을 모두 포함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정·시행 - 내부 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1.2.2) : 내부 관리계획 이행 실태 연 1회 이상 점검 -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이행 여부 정기적 검토 및 CPO 보고(1.2.3) :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에 따른 활동 여부의 정기적 검토 및 CPO 보고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공개(3.1.9) :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공개 - 개인정보파일 보존기간 재산정(3.2.1)(3.5.1) :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파일 보존기간 재산정 - 계정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4.1.2) : 개인정보취급자((비공무원 포함) 계정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 교육실시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해당없음
평가결과		•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1장)는 개인정보 침해대응, 정보주체권리보장 평가분야 전체가 양호한 상태로 평가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 조직 평가분야는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미 점검과 개인정보보호 계획 평가분야는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필수 사항 미 포함 등 일부 미흡한 상태로 확인됨. •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2장)는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공시스템 내부관리계획 평가분야는 평가분야 전체가 양호한 상태로 평가됨 • 개인정보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는 이용·제공, 위탁 평가분야는 양호한 상태로 평가되었으나, 수집 평가분야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공개 미흡, 보유와 파기 평가분야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를 준용하는 보존기간 미 산정 등 일부 미흡

	한 상태로 확인됨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는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물리적 접근방지, 개인정보의 파기,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처리구역 보호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평가되었으나, 접근권한의 관리 평가분야는 계정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미 실시 등 일부 미흡한 상태로 확인됨 • 도출된 8건의 침해요인은 단기(1건) 및 장기(7건) 조치 사항으로 구분되며, 수립된 개선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다만, 장기 조치 사항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이행 지연에 따른 보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자원 투입과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